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17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김태선 · 박 정 · 이재관
김영환 · 한민수 · 허 영
김영배 · 김병주 · 김용만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 관련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인 신체검진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거나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조치에 불과하며, 모든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자 간 형평성

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및 제11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에는 구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체검사서”라 한다)의 제출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에 드는 비용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채용서류”를 “채용서류(신체검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생 략) <u><신 설></u>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비용 에는 <u>구직자의 건강상태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체 검사서”라 한다)의 제출에 드 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에 드는 비용 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 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u>채 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 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u>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 ----- ----- ----- <u>채용</u> <u>서류(신체검사서를 포함한다.</u> <u>이하 같다)</u>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